

Certificat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개인 기업)

2023,2024년 창업 기업
(유효기간 : 2024.04.01~2025.03.31)



CONTENTS

01 | 신청서 작성 (3 ~ 8p)

02 | 진행 상황 확인 (9 ~ 10p)

03 | 과거 규모확인 추가절차 진행 (11p)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04 | 확인서 출력 / 수정 (12 ~ 14p)

2023년, 2024년 창업 기업의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회원 가입 후 신청서만 작성하면 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필수)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 T -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범위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



Registration form with fields for ID, password, and a '회원가입' (Sign Up) button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number 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제출 순입니다.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Online Data Submission)

STEP 02: 제출자료 조회 (Check Submitted Documents)

STEP 03: 신청서 작성 (Application Form Writing) - STEP 04: 진행상황 확인 (Check Progress) -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Certificate Output/Modification)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중소기업 범위



홈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작성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안내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의처

신청서 작성

제출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한 동의

중소기업확인서 신청 시 신청기업의 정보 및 경쟁입찰제한여부 확인서 등을 허위 또는 잘 못 입력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 제출 (동 시스템 신청서 및 화면에 직접 입력한 사항 포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및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자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된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 신용정보는 중소기업 여부 판단 및 공지사항 전달 등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성명, 고유식별정보,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중기현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 3자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 신용정보는 중소기업 판단 및 공지사항 전달 등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받는 자

공공구매종합정보,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등

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성명, 고유식별정보,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공무원 확인사항

전자등록증명

만등기사항증명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를 수집 및 홈페이지 내 공개를 합니다. 수집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확인 여부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당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정보 등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전체동의

확인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Q: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시

나의정보에서 기업정보를 입력하세요.
나의정보를 수정하시겠습니까?

※ 클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해당확인서유급제출예외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보입니다.

A: [나의정보]에서 기업정보 입력 후 재접속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온라인자료제출]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에서 제출자료완료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
 (직전, 당해연도 창업기업, 3개년 간편장부기업, 분할·합병, 관계기업보유 기업 제외)
 * 물음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기업명 *	<input type="text" value="힘내세요중소기업"/>	대표자명 *	<input type="text" value="홍길동"/>
기업유형 *	<input type="text" value="개인기업"/>	본점사업자등록일	<input type="text" value="2023-11-25"/>
본점사업자번호 *	<input type="text" value="123-45-12345"/>		
*고유번호입력불가			
본점사업장주소 *	<input type="text" value="07233"/>	우편번호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input type="text" value="힘내세요중소기업"/>	
최근사업기간말	<input type="text" value="2023-12-31"/>		
확인서용도 *	<input type="text" value="그이외"/>		
주업종 *	<input type="text" value="I-숙박및음식점업"/>		
2023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업종 *	<input type="text" value="I-숙박및음식점업"/>		
(직전년 매출액이 가장 큰업종)	창업기업및업종이 1개인 경우 위의 업종과 동일하게 선택.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상세페이지 참조		

주의

- ① 폐업한 사업자는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② 본점사업자 등록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일'
- ③ 최근사업기간말일로 확인서 유효기간이 판단되어 집니다. 신청서 작성 이전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캠퍼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유효기간에 맞는 최근사업기간말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④ 주업종 판단이 어려울 경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해당 여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하지 않도록 함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 **저장하면 자동 체크 됨.**

간편장부대상기업
 * 최근 3개년 연속으로 간편장부대상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 최근 3개년 이내 복식부기대상이 된 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신고 인원 없이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 대표자 1인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최저액 미달등으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등이 해당

5

1. 본점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자등록일"
 (개업 연월일 아님)

2. 최근사업기간말일 : **2023-12-31 (고정)**

3. 확인서 용도:

공공입찰용/
 공공입찰용+그 외/
 그 이외 중 선택

4. 주업종 & 2023년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동일하게** 선택:

세무대리인 있다면 → 신청 기업의 '업종 대분류' 문의

세무대리인 없다면 →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대분류' 검색

5. '저장' 클릭 시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에 자동으로 체크됨.

6. 다음 페이지 이동

※ 나머지 항목은 선택하지 말 것.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창업 기업 입력 화면

※ 주의사항※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창업한 기업은 아래에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오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주요 재무정보는 매출액, 자산총액 모두를 입력하셔야 하며 입력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0' 이상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만큼 최소한 '0'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신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주요재무정보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예시.오천만원=50,000, 일억원=100,000) (단위:천원)

Form with fields for 창업일 (2023-11-25, 2024-04-01), 매출액 (65,322 천원), 자산총액 (500,000 천원). Includes a red box highlighting the financial data and a red circle '1' on the first startup date.

입력시 참고사항

▶ 매출액

창업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매출액을 합한 금액
(예시) 창업일: 2020.01.01, 산정일: 2021.05.01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 2021.04~2020.05의 각 월 매출액 합산
창업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예시) 창업일: 2021.01.06, 산정일 2021.08.0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21.02~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2021.07 월 매출액을 합하여 ÷6(사입기간 6개월) × 12(12달)=신청기업의 매출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청일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일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 자본금, 자산총액, 자기자본

직전연도 창업한 기업: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금액. 단, 자본금은 '자본금+자본잉여금' 금액
당해 사업연도 창업한 기업: 당해 사업연도 개시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금액. 단, 자본금은 '자본금+자본잉여금' 금액

상시근로자수(명)

Table with 12 columns for months (1월 to 12월) and a row for 상시근로자수 with values: 2, 2, 1, 1, 1, 2, 2, 2, 2, 3, 3, 3.

입력시 참고사항

▶ 상시근로자수

창업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입력
창업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입력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창업한 경우: 신청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입력
상시근로자수 = 총 근로자 수 - (임원 +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연구전담요원 +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임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한 인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도 퇴사한 임원은 제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
그 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연구전담요원: 인증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등록된 연구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는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법인의 경우, 본점 및 지점 인원을 모두 합하여 계산 함

Navigation buttons: 이전, 저장 (highlighted with red box and circle 3), 다음 (highlighted with red box and circle 4).

1. 매출액 : 신청일이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따라 계산 하여 입력.

(아직 매출 발생이 하나도 없는 경우 '1' 이라도 입력.)

자산총액: 자본금, 사업초기 비용 등으로 대략적으로 산정 가능한 금액 입력.
(자산총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 초기자본금, 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산출이 가능한 자산 입력)

<천원 단위> : 숫자 입력 시 상단에 한글로 단위가 함께 표기 되니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 바람.

2. 상시근로자 :

신청일이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 12개월 미만인 경우에 따라 계산 하여 입력.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정규직 직원만 입력.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단시간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등 제외)

직원이 없는 경우 '0' 입력.

3. 저장

4. 다음 페이지 이동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 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해당하지 않음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해당여부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해당하지 않음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 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대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원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위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참여자격 취소 또는 정지 및 1년이하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에 처할 수 있으며, 동 법 제3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의 유의사항 및

각 항목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셨습니다가?

1. 2. 예 아니요

작성일자 2024-04-01 제출자 홍길동 대표자 홍길동

3. 4. 이전 저장 다음

* 용도가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받는 경우에 나오는 페이지.

[그 이외]인 경우는 나오지 않음.

1. 위 항목들의 해당여부 확인하여 체크 후 "예" 클릭

2. 제출자, 대표자 이름 입력

3. 저장 클릭

(공공구매 종합정보-당일반영 조달청(나라장터)-익일 반영)

4. 다음 페이지 이동.

※ 법령 해석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저장하였습니다. 화면 아래쪽의 다음을 선택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당일), 나라장터(익일)반영됩니다.

확인

신청자정보

1

신청자성명 *	<input type="text" value="홍길동"/>	휴대전화번호 *	<input type="text" value="010"/> <input type="text" value="0000"/> <input type="text" value="0000"/>
회사전화번호 *	<input type="text" value="02"/> <input type="text" value="0000"/> <input type="text" value="0000"/>		
이메일 *	<input type="text" value="test"/> @	<input type="text" value="naver.com"/>	<input type="text" value="naver.com"/>

2

이전 저장

📄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지배·종속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누락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사책에 참여한 경우 지원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3

신청서 제출

확인서가 자동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상담: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센터)

온라인 자료제출: 1811-6508

신청서 작성관련: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는 [홈페이지 상단]-[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발급안내 문의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성명에 2명 이상의 사람을 입력하거나 이메일에 마침표(.) 혹은 특수문자를 입력할 경우 오류 발생하므로 입력 시 유의할 것

2. 저장

3. 신청서 제출 클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중소기업 범위 확인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자상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중소벤처24 EasyPass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진행 상황 확인' 클릭

공지사항

☆공시대상 기업 및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기업 확인...	2023-06-02	소상공인 유예검토 진행상태로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	2022-07-11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안...	2023-06-02	금융 및 보험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자료제...	2022-04-12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	2023-05-16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호...	2022-05-20
★ 긴급공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제출량 증...	2023-03-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2021-11-17
☆☆☆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	2023-02-28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2021-05-12
☆☆ 2023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	2023-02-28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 2023년 소상공인 유예검토 안내 ☆	2023-02-28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1-07-07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1811-6508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규제장터 1번가

함께 살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알려줘_중기서

중소벤처기업부

KODATA

중소기업 금융 상담부

기업마당

WORKNET

운영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수집거부 저작권정책 ▲ 정보의 재유출 및 자료제공은 할 수 없습니다.

0723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코데이터빌딩, KODATA
Copyright (C) KOREA RATING & DATA.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안내
-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
- 신청서작성
- 진행상황확인**
- 확인서출력/수정
- 발급안내문의처

진행상황 확인

진행상황 조회

1. 진행상황이 [자료제출 확인요청] 및 [자료미제출]인 기업은 [결과보기]-[오류]확인을 통해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 하신 뒤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기업이 [관계기업, 직전,당해연도 분할,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자료를 제출 할 경우 자료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조회

진행상황 결과

발급일자	진행상황	상세내용	중기확인결과	결과보기	비고
2024-04-01	완료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완료되었습니다.	A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완료

또는

진행상황 결과

발급일자	진행상황	상세내용	중기확인결과	결과보기	비고
	완료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완료되었습니다.	B	중소기업아님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

관계기업, 직전, 당해 합병, 분할기업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 불가

- ※ 서울 소재 기업은 '관계기업 오류' 및 '합병·분할기업 오류' 인 경우 관련자료를 우편 접수 부탁드립니다.
- ※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 을 통해 관련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자료제출확인 여부 및 진행상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진행상황이 '관계기업 오류' 및 '합병, 분할 기업 오류' 인 경우 처리 절차 아래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를 클릭하여, 관련 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제출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

- * 관계기업, 직전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제출
- 2. 진행상황이 부적합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 3. 진행상황이 담당자 접수일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확인중인 것임
- 4. 진행상황이 '판단불가'인 경우 처리절차 '비고'란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판단불가건을 삭제처리하신 후 다시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 (상사근로자가 연평균 '4' 최근사업기간말일, 출자기업정보 오기제로 인한 판단불가로 나온 경우는 반드시 오기제한 정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확인서 발급됨)
- 5. 진행상황이 외국법인 오류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안내

<진행상황 결과>

A → 기업규모에 따라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됨.
확인서 발급완료 버튼 클릭 시 출력페이지 이동

B 중소기업 아님 → 매출액, 자산총액 '원단위'로 오입력한 경우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안내] 클릭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에게 삭제
요청 후 신청서 재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진행상황 확인

발급

발급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2. 일반기업이 [관계기업, 직전.당해연도 분할.합병 자료제출]를 통해 자료를 제출 할 경우 자료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조회 2024-08-02 2024-09-02 검색

진행상황 결과

발급일자	진행상황	상세내용	중기확인 결과	결과보기	비고
2024-04-01	소상공인유예검토	<p>소상공인 유예검토 추가 절차가 필요한 상태로 오른쪽 단계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p> <p>창업연도 작성방법</p> <p>창업 이외연도 작성방법</p>		<p>1단계 과거자료제출</p> <p>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p> <p>3단계 새로고침</p>	추가제출자료 안내

신청기업의 과거규모확인 필수사항 입력

2022-12-31

전해

전해

부

부

65,332

3,575

1

저장

<진행상황 결과>
C. 소상공인 유예검토-> 당해연도 판단결과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인 경우에 나오는 페이지.

- [2단계 과거확인 필수사항 입력] 클릭
- 2022-12-31일 결산일자 기준 **ㄱ.주업종**, **ㄴ.직전년 주업종** 선택 후 **ㄷ.당기매출액**, **ㄹ.자산총액**, **ㅁ.상시근로자 수** 등 수기 입력
 * 입력방법은 ? 참조 / 창업기업 여부는 자동 체크됨
- [저장] 클릭
- [닫기] 클릭
- [새로 고침] 클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자상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중소벤처24 EasyPass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

‘확인서 출력/수정’ 클릭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공시대상 기업 및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기업 확인... 2023-06-02	소상공인 유예검토 진행상태로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 2022-07-11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안... 2023-06-02	금융 및 보험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자료제... 2022-04-12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 2023-05-16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호... 2022-05-20
★ 긴급공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제출량 증... 2023-03-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2021-11-17
☆☆☆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 2023-02-28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일할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인... 2021-05-12
☆☆ 2023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 2023-02-28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 2023년 소상공인 유예검토 안내 ☆ 2023-02-28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1-07-07

☎ 상산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1811-6508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 KODATA
- 중소기업 금융당국 기업마당
- WORKNET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운영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수집거부 저작권정책 ▲ 정보의 재유통 및 자료제공은 할 수 없습니다.

07237 서울시 영등포구 의상대로21, 코데이터 빌딩, KoDATA
Copyright (C) KOREA RATING & DATA.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안내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의처

확인서 출력 / 수정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및 발급용도를 수정 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조회

기간조회

조회결과

선택	발급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확인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4-04-01	0010-2024-523	2024-04-01 ~ 2025-03-31	소상공인

확인서 수정

- [공공기관입찰용]으로 발급 완료된 경우 기간 연계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발급일 기준) 당일 연계

1. 선택된 확인서 (checkbox)

2.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

3. 발급번호: 0010-2024-523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명: 원내세요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12345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원내세요중소기업
 유효기간: 2024-04-01 ~ 2025-03-31
 용도: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4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4. 확인서 인쇄 버튼

- 발급된 확인서 선택
-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영문 확인서 사용을 원하면 확인서 수정에서 영문 정보 입력 후 '영문확인서 출력' 클릭
- 팝업창에서 확인서 확인
- 확인서 인쇄하여 사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안내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의처

확인서 출력 / 수정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및 발급용도를 수정 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조회

기간조회 2023-01-31 2024-04-30 검색

조회결과

선택	발급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확인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4-04-01	0010-2024-523	2024-04-01 ~ 2025-03-31	소성광인

« < 1 > »

확인서 수정 국문확인서 출력 영문확인서 출력 공공입찰용으로 용도변경

확인서 수정

[공공기관입찰용]으로 발급 완료된 경우 기관 연계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발급일 기준) 당월 연

확인서 변경 후

기업명: 힘내세요중소기업

대표자명: 홍길동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 힘내세요중소기업 | 우편번호

지점사업자번호: | 우편번호

지점사업자주소: | 우편번호

용도: 전채등업

확인서지점표기여부: 예 부

영문확인서여부: 예 부

영문기업명: |

영문대표자명: |

영문주소: |

영문지점사업장주소: |

저장

※ 수정 가능한 항목 :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확인서 용도, 지점표기 여부. 영문확인서 여부

1. 수정할 확인서 선택

2. 확인서 수정 출력 클릭

3. '확인서 변경 후' 부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 수정

4. 저장

5.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수정하였으면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 02-6974-1322

THANK
YOU